

# 조선시대 법률문화에 대한 비교사적 고찰 - ‘소송사회론’을 중심으로 -

심재우(한국학중앙연구원)

## <목차>

1. 머리말 : ‘소송사회론(訴訟社會論)’과 조선사회
2. 조선시대 소송(訴訟)에 대한 인식과 소송 제한 조치
3. 조선후기 소송의 증가와 민사소송 지침서의 출현
4. 『민장치부책(民狀置簿冊)』을 통해 본 조선후기의 소송 양상
5. 맺음말 : 조선후기 ‘호송(好訟)’ 양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 1. 머리말 : ‘소송사회론(訴訟社會論)’과 조선사회

이 글은 조선후기 법전과 목민서, 백성들이 지방관에 게올린 소송장인 민장(民狀) 분석을 토대로 당시 소송의 실태와 양상, 백성들의 권리의식과 법률문화의 특징을 추적하는 것이 목적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전통 시대에 중국과 조선의 법률이 민사소송보다는 형사사건에 훨씬 더 주목하면서 형법(刑法, criminal law)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처럼 법의 근간이 주로 백성의 통제에만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당시 백성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민사소송은 많지 않았으며, 민사분쟁에 대한 국가적 관심 또한 적었을 것으로 최근까지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사 연구에 따르면 명, 청 사회가 지금까지의 일반적 상식과 달리 소송이 매우 활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예컨대, 일본 교토(京都) 대학교 후마스스무(夫馬進) 교수는 조선과 같은 시기에 존재했던 명, 청 사회가 지금까지의 일반적 상식과 달리 민사소송이 매우 활발했던 ‘소송사회(Litigious Society)’였다고 말한다. 소송억제라는 사대부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달리 관아에서는 백성들의 소송을 억제하지 않았고, 보통 사람들도 소송을 포기할 만큼 관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sup>1</sup>

그는 몇 개 지역 관감서(官箴書)와 지방관의 행정 기록을 분석한 결과 당시 일개 현(縣)에서 1만매, 2만매 또는 그 이상의 소송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好訟’, ‘健訟’의 풍조가 만연했다고 파악했다. 예컨대, 호남성(湖南省) 영원현(寧遠縣)의 경우 13,366호(1816년 기준) 규모의 가족이 건륭제 시대에 1년 평균 약 1만매의 소송문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물론 제출된 소송문서가 모두 관에 의해 처리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불러심리하여 실제 판결을 내린 사건이 제출된 소송문서의 10퍼센

<sup>1</sup> 夫馬進, <明清時代の訟師と訴訟制度>, <<中國近世の法制と社會>>,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93.

트를 넘지 않았다고 가정해도, 지방관한사람이 1년에 1천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소송사건을 처리했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같이 결과는 중국의 문화적 전통이 소송하기를 싫어하고 백성들의 권리의식도 미약했다고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울러 종래 전통 중국에 민법(civil law)이나 민사재판(civil justice)이 없었다고 여기는 서구 연구자들의 오래된 기존 관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역설해준다.<sup>2</sup>

그렇다면 중국과 동일한 법률문화권에 속해 있던 조선시대의 소송양상은 어떠했을까? 주지하듯이 전근대 한국의 경우 중국 법률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특히 조선의 경우 명나라의 『대명률(大明律)』을 일반 형법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중국과 유사한 법률문화를 공유하였다. 조선사회 소송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중국과 조선사회의 비교, 나아가 동시기 동아시아사의 전개 과정이 갖는 특징 등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sup>3</sup>

이 글은 명청시대 ‘소송사회론’에 관한 중국사 연구의 최신 성과를 염두에 두고 현존하는 조선의 19세기 지방사회 소송의 양상을 몇 개 군현 자료에 대한 통계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당시 지방사회에서 일어났던 분쟁의 주요 내용, 재판의 진행 절차, 지방관들의 과중한 소송 부담의 양상 등을 비교사적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2. 조선시대 소송(訴訟)에 대한 인식과 소송 제한 조치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국의 법률에는 형법만 있고 민법은 없다는 통념과 달리, 명청시대 에 소송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국가는 소송 당사자들을 처벌하기는 커녕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재판을 일상적으로 집행하였다.

그렇다면 동시기 조선시대의 경우 소송을 얼마나 되었고,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언급하기로 하고, 우선 조선시대 정부와 관리들의 소송에 대한 기본 인식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의 정부와 관리들은 동시기 중국과 마찬가지로 소송이 만연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 이유는 유학의 종장인 공자가 『논어(論語)』에서 이야기한 “송사를 심리한다면 나도 다른 이와 같겠지만, 나는 반드시 쟁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다.

공자는 소송이 없는 ‘무송(無訟)’의 경지, 즉 예(禮)로 다스려져서 형벌과 다툼이 필요 없는 사회를 가장 이상적인 정치가 실현된 것으로 간주했고 중국뿐 아니라 조선의 유학자들도 두이 말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겼다.

---

<sup>2</sup> 중국의 민사소송 관련 연구의 새로운 경향은 다음 연구가 참고된다. Philip C. C. Huang, *Civil Justice in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sup>3</sup> ‘중국소송사회론’은 학계의 검증을 거쳐 시민권을 가진 담론으로 아직 보기는 어렵지만, 중국 법률문화를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하려는 시도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송사회론의 실증적 정교화 작업과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최근 夫馬進 교수의 국제적인 공동연구 성과물과 박영철 교수의 아래 논문 참조. 夫馬進編, 『中國訴訟社會史の研究』,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1 ; 박영철, <중국소송사회와 전제지배> <<역사학보>> 214호, 2012.

사대부관리들입장에서소송이성행한다는것은사람들간의반목과다툼이증가하는것을의미하며, 이는민심이천박해지고도덕과체통이타락했음을보여주는증표로인식했기때문이다. 한마디로소송이만연하다는것은그들이생각하는바람직한사회의모습과는거리가멀었다. 따라서명, 청및조선국가의공식적입장에서는모든소송은사회질서와조화를해치는‘골칫덩이’에불과하였다고하는것이적절할것이다.

실제조선시대관에서시행한정책중에는크고작은소송을억제하기위한조치를확인할수있다. 먼저조선시대각고을을다스리는지방관들이중점적으로지켜야할일곱가지업무를규정한‘수령칠사(守令七事)’ 가운데‘사송간(詞訟簡)’이있었다는것에 주목할필요가있다. ‘사송간’은수령이관내에서발생하는소송을최대한억제하도록애쓸것을주문하는내용이다. 수령7사는수령의근무성적을평가하는기준이었는데, 고을수령이처리한소송이적을수록그가고을을잘다스린것으로간주됐음을의미한다.

또한 중국의 ‘송사(訟師)’에 대한 처리와 마찬가지로, 민간에서 소송을 부추기거나 백성들의 법률 자문, 소송대리인 역할을 해주던 자들을 말하는 ‘외지부(外地部)’를 불법시하고 처벌하였다.<sup>4</sup> 이는 백성들이 타인의 도움으로 함부로 소송을 일삼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였으며, 전근대 중국과 조선에서 법학의 발전과 자유로운 법조인의 출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관에소송장을내는시기를제한하기도했다. 즉춘분뒤부터추분전까지는살인, 강도, 도망노비문제등과같은중대사안이야닌모든소송은‘잡송(雜訟)’이라부르고, 이러한목적의소송장은수리하지않도록했다. 농번기에불필요한소송으로백성들이농사일을망치는것을막고자하는의도인데, 이조항은 『경국대전(經國大典)』 형전(刑典)의 「정송(停訟)」조항에실려있다.<sup>5</sup>

이뿐만이아니었다. 조선시대지방양반들은향약(鄉約) 등을통해사회문제를자체적으로조정처리했으며웬만한분쟁은관에까지가는대신에양반들의회의를통해마무리짓도록했다. 이때가까운친인척사이의분쟁이라든가, 혹은양반들의조정의견을무시하고함부로관에소송을제기하는행위에대해쓸데없이송사를일삼는다는뜻으로 ‘비리호송(非理好訟)’이라지목하여처벌하기도했다. 사대부들은교화(教化)를통해백성들의풍속을순박하게하면자연히소송도사라질것이라고생각하였다.<sup>6</sup>

요컨대, 조선시대정부와사대부관리들입장에서민간의소송은원론적차원에서사회안정에도움이되지않는불필요한, 혹은심하게는불온한것으로인식되었다.이러한인식

---

<sup>4</sup> ‘외지부’에 대해서는 박병호, <<한국법제사고>>법문사, 1974, 316쪽 및 한상권, <조선시대 소송과 외지부(外地部)><<역사와 현실>> 69, 2008 참조.

<sup>5</sup>그러나 조선후기에 오면 실제 停訟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았고, 후술하듯이 송사가 크게 증가한다. 고문서 분석을 통해 정송 규정이 유명무실했음을 밝힌 연구로는 전경목, <산송을 통해서 본 조선후기 사법제도 운용실태와 그 특징><<법사학연구>> 18, 1997이 있다.

<sup>6</sup>16, 17세기 재지사족의 향권(鄉權) 장악, 이를 바탕으로 한 지방민 통제와 소송 억제 노력에 관한 내용은 한상권, <조선시대의 교화와 형정><<역사와 현실>> 79, 2011, 281-285쪽 참조.

하에 국가적 차원에서 소송을 제한 내지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같은 방침의 실효성이었다. 사실 조선 국가의 소송에 대한 공식적 입장과 사대부의 이상론과 달리 현실에서 소송은 조선후기에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지방관들은 원활한 소송 처리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한다.

### 3. 조선후기 소송의 증가와 민사소송 지침서의 출현

앞서 본 것처럼 조선 시대에 민사소송에 대한 정부와 사대부들의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소송이 별로 없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국가에서도 민간 소송을 대비해 소송 관련 법규 과 제도를 정비 하였음은 물론, 합리적인 영을 위한 노력을 다했음은 조선 시대의 법전과 관련 고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소송의 관할과 재판 기관이다. 지금과 달리 행정권과 사법권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지 않은 조선에서 각 고을의 소송 처리는 지방관인 수령이 담당했다. 물론 수령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급 기관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었다.

재판 결과가 억울할 경우 지금의 도지사에게 해당하는 관찰사에게 호소할 수 있었으며 해결이 안 되면 다시 중앙 기관인 사헌부(司憲府)에 항소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마저도 안 되면 신문고(申聞鼓)를 치거나, 조선후기 처럼 상언(上言), 격쟁(擊錘)의 방식으로 국왕에게 직접 호소하는 길도 있었다. 조선 시대 국왕은 최고의 재판관이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소송의 절차이다. 당시 백성들은 피고가 소재한 고을에 소장을 제출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는 오늘날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조선 시대 재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재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 및 변론의 책임이 소장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있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소장을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고 자신이 직접 피고를 데려와야 재판이 진행될 수 있었다.

무지한 백성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증거를 확보하여 재판관을 설득하는 일, 원고가 상놈이고 피고가 양반일 경우 피고를 재판정에 데려오는 일 등은 모두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송이 지체되게 마련이었고, 설사 판결이 잘 나더라도 여러 가지 후유증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에 오면서 백성들은 국가가 제공한 소송 제도를 적극 이용하였고, 그 결과 지방관들은 ‘소송의 홍수’라 할 만큼 소송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할 정도였다.<sup>7</sup>

이때 지방 고을에서는 소송 처리의 일차적인 책임을 맡은 고을 수령의 역할이 제일 중요했다. 흔히 ‘원님 재판’이라 하여 당시 일정한 절차나 원칙도 없이 수령이 제멋대로 판결을 내렸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조선 시대 민사 판결문을 보면 소송의 내용, 원고와 피고의 진술, 제출된 증거 문서와 최종 판결 등 소송의 진행 상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

<sup>7</sup>18세기 후반 지방관의 업무 지침서에 해당하는 <<要覽>>이라는 책에는 “백성들의 풍속이 송사를 좋아한다(民俗好訟)”고 한 것이 그 한 예이다. <<要覽>><決訟>조 참조(<<조선민정자료총서>>, 여강출판사 수록)

재판의 진행 및 변론 과정을 볼 때 원님 재판이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조선후기에 들어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소송이 증가하게 되자 고을 수령들은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마련한 대책 가운데 하나가 민사소송지침서의 편찬, 활용이었다. 당시 편찬된 민사소송지침서는 『경국대전』 등 여러 법전에서 소송에 필요한 주요 법규만을 뽑아 분류하여 정리해 놓은 일종의 실무용 간편 법률서적이었다.

조선시대 민사소송지침서로서 대표적인 것은 1585년(선조 18) 경기도 안산군수를 지낸 김백간(金伯幹)이 편집한 『사송유취(詞訟類聚)』라는 책이다. 조선후기에는 이밖에도 『청송제강(聽訟提綱)』, 『사송유초(詞訟類抄)』, 『대전사송유취(大典詞訟類聚)』 등 다양한 실무용 법서가 여럿 만들어져서 활용되었다.<sup>8</sup>

소송증대에 따른 지방관의 대책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또 있었다. 즉 조선후기에 만들어진 지방관의 일종의 업무지침서에 해당하는 목민서(牧民書)에서는 소장이 폭주했을 때를 대비하여, 예측되는 소송을 유형별로 나누어 미리 모범적인 판결문안을 만들어 두었다가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예컨대 19세기의 『목강(牧綱)』이란 책에서는 관에 제기될 수 있는 소송의 유형으로 양반과 상놈간의 다툼, 노비와의 전답분쟁, 채무문제, 구타사건, 부세문제, 산송(山訟) 등을 상정해 놓고 수령이 각각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매뉴얼을 실어 놓기도 했다. 이상의 예로 볼 때 조선후기에 민사재판이 당시 수령들의 매우 중요한 업무의 하나였고, 지방관들이 이 문제에 많은 신경을 써야 했던 상황이었음이 분명하다.

#### 4. 『민장치부책(民狀置簿冊)』을 통해 본 조선후기의 소송 양상

조선후기 실무용 법서의 출현, 지방관의 목민서에서 확인된 소송에 관해 강조한 내용은 어찌 보면 조선시대 소송의 경향성만을 보여 줄 뿐 실제 소송의 실태를 확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조선후기 소송이 얼마나 폭주하였으며, 민이 관에 올린 소송장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살펴 보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19세기 몇종의 『민장치부책』 분석을 통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석에 앞서 『민장치부책』의 성격과 자료 가치는 다음과 같다.

『민장치부책』은 말그대로 백성들이 지방관에 게 올린 소장(訴狀)을 접수한 관청에서 소장의 내용과 처리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한 책이다. 조선후기에 작성된 목민서(牧民書)에 지방관들이 재판한 기록들을 책자로 남길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민서의 기록을 토대로 할 때 수령의 재판 기록이 『민장치부책』의 형태로 본격적으로 정리, 편집되는 시기는 사회경제적 변동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심화되던 조선후기에 와서이다. 민장은 민사소송장, 행정청원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그렇지만 때로 구타, 절도 등 형사사건 관련 고소, 고발사건 등 오늘날의 형사범과 관련한 내용도 일부 담겨 있다. 민장은 조선시대 지역 사회에서의 백성들의 갈등과 대립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지만, 현존 『민장치부책』의 대상 시기는 19세기, 그것도 한 말에 집중되어 있는 점이 흠이다.

<sup>8</sup>심재우, <조선후기 목민서의 편찬과 수령의 刑政運營><<규장각>> 21, 1998 및 임상혁, 2001 <조선전기 민사소송과 소송이론의 전개> 서울대 법학박사학위논문 참조.

『민장치부책』에 수록된 민장의 기재 형식은 대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소장을 제출한자의 거주지와 성명, 소장의 내용을 적고, 둘째, 이에 대한 관의 판결 및 처분 [題辭] 내용, 셋째, 판결 수행의 책임을 맡은 담당자의 명칭 순으로 적혀 있다. 민장치부책은 소장(訴狀)과 판결문을 초록한 형태이므로 상세한 소송 내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없지 않지만, 해당 지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던 정치, 경제, 사회, 신분, 풍속 등과 관련한 사건이 거의 망라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조선후기 소송의 양상을 살펴 보기 위해 19세기 전반 전라도와 경상도 각각 한 개 군현의 『민장치부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들 사례만 가지고 조선 시대의 소송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빈번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를 통해 대략적인 백성들의 법의식과 소송 양상은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전라도 영암군의 사례이다. 1838년(헌종4) 7월과 1839년 3월 두 달간 영암군수가 처리한 민장을 모아 놓은 서울대 규장각 소장 자료인 <<영암군소지등서책>>에 의하면, 두 달 동안 관에서 접수, 처리한 민장이 모두 435건에 달한다.<sup>9</sup> 이는 군수가 한 달 평균 200여 건이라는 적지 않은 수의 민장을 처리했음을 보여 준다.

영암군의 민장 내용은 오늘날의 청원서, 행정소송에 해당하는 것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소송의 특징을 단정해서 이야기 할 수는 없다. 대략 전정(田政), 군정(軍政), 환곡(還穀) 등 부세 문제에 대한 청원이 50% 정도 되고, 토지 및 묘지 소송, 재산권 분쟁 등 오늘날의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30~40% 정도에 달했다. 전체 민장의 처리 숫자만 놓고 보았을 때 영암군수가 하루도 쉬지 않는 다하더라도 하루에 최소한 7건의 민장을 처리해야 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군수가 결코 적지 않은 소송 처리 부담을 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둘째, 경상도 영천군의 사례이다. 1846년(헌종12) 영천군에 접수된 민장을 모은 규장각 소장 <<민장초개책>> 자료에 의하면, 약 한 달간 총 176건이 접수되었다. 이 수치는 앞선 영암군의 민장 처리 건수와 비교할 때 약간 적은 규모이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앞의 19세기 전반 두 개 군현의 사례 외에도 19세기 후반 전라도 영광군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sup>10</sup> 이들 조선 시대 군현의 소송 건수 자체만 놓고 볼 때 서두에서 언급한 명, 청시기 중국 주현(州縣)의 소송 접수 건수에 비해 절대 숫자는 작다. 하지만 당시 조선의 군현 규모와 인구 수가 중국보다 훨씬 작았음을 고려할 때 중국과 마찬가지로 소송이 빈번했다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19세기 조선에서도 동시기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데 큰 거리낌이 없었음을 보여 준다. 이로 인해 조선후기 지방관들은 매우 과중한 소송 부담을 안고 있었다. 제한된 사례를 가지고 단정짓긴 곤란하지만 조선 또한 중국과 마찬가지로 ‘소송사회’의 한 모습을 띠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sup>9</sup>영암군 및 아래 영천군 사례는 김인걸, <‘민장’을 통해 본 19세기 전반 향촌 사회문제><<한국사론>> 23,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6을 참조하였다.

<sup>10</sup>박명규, <19세기 전반 향촌사회의 갈등구조-영광지방의 민장내용분석-><<한국문화>> 14, 1993.

## 5. 맺음말 : 조선후기 ‘호송(好訟)’ 양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다시말하지만 중국의 법이 백성의 통제를 위한 형벌 위주의 규정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고 소송이나 민사 재판 관련 규정이 불비하였기 때문에 당시 민의 권리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분쟁이나 소송이 적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편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서두에 서필자는 교토대학교 후마스스무교수의 중국사 연구 성과를 근거로 이에 대해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리고 동시기 조선의 경우는 사정이 어떠했는지를 19세기 『민장치부책』을 남긴 두세 군현의 사례를 통해 살펴 보았다.

개괄적인 검토이긴 하지만, 분석 결과 조선후기 사회에서도 소송이 매우 일반화된 상황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었으며, 이로써 한국 전통 사회가 소송을 꺼리는 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는 인식 또한 중국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오해, 또는 편견이라 할 수 있다. 조선 시대에 소송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인식되긴 했지만,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법정으로 달려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음이 역사적 진실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당시 사료에서도 ‘호송(好訟)’으로 표현되듯이, 조선후기 소송의 만연 현상은 중요한 사회적 현상의 하나였던 것이다.

요컨대, 비교사적 측면에서 볼 때 조선후기 사회는 중국의 명, 청 시대와 마찬가지로 ‘소송사회’로 불려도 무방할 정도로 법적 제도적 기반, 민의 법의식의 측면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조선 시대에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비록 일정한 한계는 있었지만, 소송에 필요한 제도와 법규가 정비되어 있었고, 백성들의 권리와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법의식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상 19세기 몇 개 『민장치부책』에 대한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조선후기 ‘소송사회’에 대한 시론적인 해석을 시도하였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를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소송 증가의 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중국의 경우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적 분규가 증가하면서 특히 명나라 중기 이후 민간인의 소송 풍조가 만연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였을 것으로 짐작이 되긴 하지만 소송 증가의 원인을 보다 상세하게 추적, 해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송의 구체적 내용과 재판 과정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민장치부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중국 명청 시기의 소송 양상, 재판 절차 등 과정 밀한 비교가 필요하다. 『민장치부책』은 현재 규장각, 장서각,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여러 종류가 남아 있으므로 이들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소송의 양적, 질적 성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송의 제약과 한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중국의 송사와 마찬가지로 소송 대리인인 ‘외지부’는 불법시되었다는 점, 중앙집권적 전제 지배의 속성상 소송의 처리가 관리, 특히 지방의 경우 지방관의 의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소송사회’의 한계를 시사하는 대목이다.<sup>11</sup> 이 또한 정밀한 분석이 요

---

<sup>11</sup> 조선후기의 민정서를 보면 지방관들은 ‘민소(民訴)’를 하찮은 것으로 인식하였고, 그에 대한 고식적인 처리를 주문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러한 지방관의 태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도 중요한 분석 포인트이다.

구된다.

이와같은작업이충분히이루어진다면우리는중국과조선등동아시아전근대사회의법과재판, 나아가법률문화의특징에한걸음더다가갈수있을것이다.